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16

2021년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1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 1. 제안이유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 성매매, 빈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위기 십대여성에게 의료지원, 정신건강 상담, 성·건강교육, 기초생활지원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건강특화 시설임
-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 2) 위탁기간 : 3년(2022.7.5. ~ 2025.7.4.)
-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 성매매,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 심리·정서 지원, 성·건강 교육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 해당분야의 현장경험과 전

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4) 위탁사무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시설 관리·운영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 의료지원
-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정서지원, 사춘기(성건강) 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 생필품 및 월경용품 등 기초생활지원, 건강돌봄 등 건강 지원 사업
- 유관기관 실무자 건강지킴이 교육,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 5) 위탁사무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 규모 : 523.89m<sup>2</sup>(본건물, 별동 총 2개동)
- 시설현황 : 산부인과·치과 진료실, 정신건강 상담실, 원예치료실, 성교육장, 멀티룸, 식당, 샤워실, 사무실 등
- 인력현황 : 8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및 간호조무사 등 6명

#### 6)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7) '22년 소요예산(안) : 78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10.6.(적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경위 및 사무의 내용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sup>1)</sup>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sup>2)</sup>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sup>3)</sup>의 관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시설 관리·운영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 의료지원
- 정신건강상담및 심리검사, 심리정서지원, 시춘기(성건강) 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 생필품 및 월경용품 등 기초생활지원, 건강돌봄 등 건강지원 사업
- 유관기관 실무자 건강지킴이 교육,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1)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청소년 건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13.2.26.)으로 최초 동의하였음. 이후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2019.9.)가 개정되어 ‘청소년건강센터’의 명칭을 ‘십대여성건강센터’로 개정됨.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3. 25.>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8.>

-이하 생략-

3)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2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성매매·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 2013년부터 총 3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음.

#### <센터의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경과>

○ 시설명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 위탁법인 : (사)막달레나공동체
○ 위탁기간 : 2019.7.5.~2022.7.4.(3년)
○ 운영인력 : 총 8명(센터장 1명, 상담원 등 7명)
○ 소요예산 : 742,737천원('21년 기준)
○ 추진경과
- 1차 : 2013.7.5.~2016.7.4.(3년, (사)막달레나공동체)
- 2차 : 2016.7.5.~2019.7.4.(3년, (사)막달레나공동체)
- 3차 : 2019.7.5.~2022.7.4.(3년, (사)막달레나공동체)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sup>4)</sup> 결과 공통사무평가, 개별사무평가, 사용자만족도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85.99점으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sup>5)</sup>(재위탁)으로 의결되었음.

#### <종합성과평가 종합 점수>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득점
공통사무평가	사업인프라	조직 및 인력 운영	4.10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4.24

4) 평가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5) '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10.6.(적정).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득점
	사업활동	사회적 가치기여	9.98
		사업계획 집행수준	8.06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6.68
개별 사무 평가	사업성과	의료지원 및 심리·정서지원	19.04
		교육지원	5.64
		기초생활 지원·네트워크 및 자원발굴	8.21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2.70
	지도점검 이행노력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2.00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4.00
사용자 만족도 평가	만족도 제고 노력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13.34
감점사례		협약사항 위반(제 3자 위탁 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합계			85.99

- 감점사례로는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신규근로자 채용 시 서울시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민간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하는데,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지 못함이 확인되어 협약사항 위반으로 감점되었음.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사항으로는 여성의학 진료와 성건강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센터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개선 요청사항이 있음.

<주요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항 공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 유형별 대응 매뉴얼 구축을 위한 사례관리 DB 시스템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을 다양한 형식으로 실시하고, 기관 탐방 및 전문가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음</li> </ul>
--------------	---



우수사항 사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의학 진료와 성건강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성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유 및 확산할만한 우수사례를 창출함</li> </ul>
개선요청사항 공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량개발을 위한 직무교육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효과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기 바람.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적기 집행율이 제고되어야 하겠음</li> </ul>
개선요청사항 사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음을 고려할 때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권 회복을 위해 사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 및 확산토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li> </ul>

###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필요성

- 위기 여성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학교를 다니는 여성청소년에 비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아플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산부인과 문진내용에서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남.<sup>6)</sup>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기출, 성매매,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임.
- 코로나19로 센터 휴진 및 휴관으로 이용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외부병원 진료지원으로 의료지원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위기 십대여성의 병원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안정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업별 이용자 현황(연인원)>

사업명	내 용	2021년 (9월말 현재)	2020년	2019년
	총 계	5,982	6,594	16,659
의료 지원	센터 내부진료 (여성의학과, 치과, 한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료)	491	474	1,243

6) 정혜원·정요한(2018), 경기도 위기 여성 청소년의 성건강 현황 및 대책,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사업명	내 용	2021년 (9월말 현재)	2020년	2019년
	외부 병원 진료지원 (타 진료과목, 중증치료, 동행진료, 협력병원 연계, 의료비 지원 등)	225	306	142
	기초검진(혈액, 염증, 초음파, 성병균 등 검사)	266	276	763
	의약품 지원(일반의약품, 복약지도)	383	119	715
	예방접종(독감, 간염 등)	26	67	197
	예방의학 프로그램 (구강보건/운동처방/안과검진·안경지원 등)	111	129	394
	의료진 건강상담(대면, 온라인, 화상앱 등)	411	697	1,360
	의료 아웃리치(이동치과버스, 구강검진, 건강상담 등)	-	13	30
	고위험군 건강 사례관리 (진료·자궁경부암예방접종·건강교육·정기검진·상담·사후관리)	61	184	87
	소 계	1,974	2,265	4,931
심리 지원	정신건강상담 및 종합심리검사	149	90	62
	심리치유 프로그램(원예치료, 아로마 테라피, 명상 등)	185	169	349
	건강, 심리·정서지지 상담(전화, 대면, 온라인 등)	536	823	973
	소 계	870	1,082	1,384
교육 지원	1:1, 소그룹 성·건강교육	294	156	859
	찾아가는 사춘기(성건강)교육 (월경·몸의 변화·면생리대 만들기 등)	266	502	470
	성·건강교육 연극	-	-	5,391
	기관 실무자 건강지킴이 양성 교육	186	17	50
	소 계	746	675	6,770
기초 생활지원	성·건강 정보제공 및 여성용품 지원	951	1,402	1,721
	식사 및 건강보조식품, 건강생필품 지원 및 꾸러미배송	1441	1,170	1,853
	소 계	2,392	2,572	3,574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위기 십대 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7조<sup>7)</sup>에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

7)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

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 성매매,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 지원 및 심리·정서지원에 대한 전문적 진료, 치료, 등 건강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하여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

#### 4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가출, 성매매,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성·건강 지원 및 지역돌봄체계 구축으로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는 안임.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16

제출년월일 : 2021년 10월 1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 성매매, 빈곤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위기 십대여성에게 의료지원, 정신건강 상담, 성·건강교육, 기초생활지원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건강특화 시설임
- 나.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현장경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 십대여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 나. 위탁유형 : 시설위탁
- 다. 위탁기간 : 3년(2022.7.5.~2025.7.4.)
-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는 가출, 성매매, 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치과 등 전문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 심리·정서 지원, 성·건강 교육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됨
- 또한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위기 십대여성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연계, 해당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마. 위탁사무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시설 관리·운영
- 산부인과, 치과 등 전문 의료지원
-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검사, 심리·정서지원, 사춘기(성건강) 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 생필품 및 월경용품 등 기초생활지원, 건강돌봄 등 건강지원 사업
- 유관기관 실무자 건강지킴이 교육,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바. 위탁사무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서교동)
- 규모 : 523.89㎡(본건물, 별동 총 2개동)
- 시설현황 : 산부인과·치과 진료실, 정신건강 상담실, 원예치료실, 성교육장, 멀티룸, 식당, 샤워실, 사무실 등
- 인력현황 : 8명
  - 센터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및 간호조무사 등 6명

사. 수탁기간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아. '22년 소요예산(안) : 780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5조, 제7조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제6조 제1호 및 제9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21년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10.6.(적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권익보호담당관 늘푸른여성팀 심효진(☎2133-5334)